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안)

도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의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충남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12개사 내외 ※ 예산범위 내 지원
- O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5. 3. 28.(금), 24:00 까지
- 지원기간: 2025년(인증상황에 따라 2026년 8월까지 연장가능)
- O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지원
 - 지원분야: CE·위생허가 등 550개 해외유명인증 및 ESG인증 57개
 - 지원비율: 총 소요비용의 70% 지원 (30% 기업 자부담)
- 지원한도: 예산범위 내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한도(부가가치세 제외)

2. 지원대상

- O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
- ※ 금년 1월1일부터 계약 후 시행되는 인증 건에 한하여 소급적용

《지원제외대상》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 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공고일 기준 타기관에서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 동 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 2024년부터 사업에 참여하여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기 지원받은 동일한 제품(HS CODE 6자리 기준)으로 동일한 인증을 획득하고자 신청하는 기업

3. 선정기준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50점미만 배제)
- O 벤처·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 보유, 각종 인증(품질인증, 시스템 인증, 국내외 인증, 특허) 등 가산점 부여
- O 3년 이내 충청남도 및 진흥원 해외사업 참가 이력 없는 기업 또는 수출액 10만\$ 미만 기업 우선선발(10%이내)

구분	서식명	제출방법	비고
필수	참가신청서, 계획서, 동의서	작성, 서명 혹은 날인 후 제출	서식1~5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5년도)	사본 1부 제출	
	2024년 수출실적증명서	기준 1구 세월	-
	2024년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		
	해외규격인증 견적서(인증 소요 비용)		
선택	벤처·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기러 이즈니 - 기타크그 제츠	출
	창업기업(3년 이내), 외국어 카탈로그,	관련 인증서 or 카탈로그 제출	
	각종 인증서 관련 증빙 자료		

[※] 공장면적 500m²미만 소기업은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제조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을 대체하여 제출 가능

4. 인증 및 지도기관

- 산통부에 품질경영 인증·수행을 보고하는 인증기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규정한 인정기관
 - CE 등 제품인증은 인증서(시험성적서)로 인증기관 확인 대체
- O 컨설팅 기관은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에 등록된 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 2인 이상 보유,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내에 4건 이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함
 - 지도기관은 해당업체의 지도인력을 지정, 사업완료까지 지도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smes.go.kr/globalcerti)를 통해 해당기관 검색이 가능한 기관

※ 단, 등록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컨설팅 비용 지원 불가

[※] 수출실적증명서 무역협회 및 통계진흥원 발급(수출실적 없어도 제출 필수)

5. 중간점검 계획

- O 참가기업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추진현황 등에 대한 현장 확인, 유선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점검(서식 6)
- 중간평가 후 인증지원기간 연장여부 결정
- 서식 6호에 해당하는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시 지원 대상에서 중단제외함
 - 단, 지원 대상 중단·제외에 앞서 참가기업에 대해 1차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획득 가능성을 검토한 후 지원중단·제외여부를 결정
 - 지원중단·제외를 결정할 경우 해당기업에 내용을 통보 후 예비 기업에 기회를 제공
 - 참가기업·컨설팅 기관은 인증획득 관련하여 요청사항 또는 시정 명령 사항에 대해 보고하도록 함

6. 지원금 지급

- O 기업과 컨설팅 기관간의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인증의 종류, 사업기간,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
- 지원대상 인증 및 보조금 예정금액은 업체별 별도선정 통보
 - 분야별 인증규격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전액 배정
- O 협약서의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완료 및 사실 확인 후 지급
 - 인증 획득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한도액을 비교, 적은 금액 지급
 - 업체 단독신청일 경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 지원
 - 사업완료 보고서, 인증서(시험서)사본, 통장사본 내역 등 제출

7. 지원일정

공고 및 접수 ≫	업체선발	» 인등획득추진 »	중간점검	≫ 완료보고	≫ 보조금 지급
공고일 ~ 2025.03.28. 24:00시까지	4월 중	4월 ~ 11월	8월	10월~11월	11월

- ※ 추진과정은 업체마다 상이할 수 있음
- ※ 인증지원과정은 최대 1년까지(2026년 8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
- ※ 지원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 O 컨설팅기관에서 해당규격인증을 획득한 후 인증획득 결과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20일 이내 제출
- O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 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을 권장
- O 협약서의 사업기간 등 사실 확인 내용과 다를 경우, 지원에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음
- O 지원기간 연장여부는 심의를 통해 결정(기본 사업기간 내 인증 가능한 경우 연장 불가)
-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업체는 차기사업 참여 배제
- ※ 지원대상 업체 또는 지도기관(컨설팅 社)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협약서는 자동으로 해약됨

9. 신청서 접수

O 접수방법

신청방법	2025. 3. 28.(금) 24:00까지 충청남도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으로 신청 ※https://cntrade.chungnam.go.kr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해외인증획득지원사업 확인 및 신청 ※ 서명/ 날인이 된 페이지 및 용량이 초과되어 첨부 못한 서류는 스캔 하여 이메일(sora00926@cepa.or.kr) 제출
제출서류	 신청서 1부(서식 1, 2, 3, 4, 5)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 자체 추진 시 서식 3번 생략

O 문 의 처:

- 충남경제진흥원 마케팅지원팀 이소라 📾 041-404-1362